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07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공영차고지 사용요율이 친환경차(전기, 수소, 천연가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높게 책정되어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친환경 전환을 저해하고 있어,
- 친환경차량인 전기·수소버스 차량에 대한 사용요율을 천연가스 버스와 동일한 2.5%로 적용하도록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 사용요율 개정(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6. 6. 11.~2026. 7. 2.(20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 없음

나.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동의

9. 참고사항: 해당 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하남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을 “공영차고지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사항 이외”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로 한다.

③ 시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사용요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용면적(시설물)을 “사용료는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로, “대한 재산 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을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가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천연가스버스 보급 운송사업자는 재산평정가격”을 “전기·수소·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는 재산평가가격”으로, “천연가스버스와”를 “전기·수소·천연가스버스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천연가스버스”를 “전기·수소·천연가스”로, “재산평정가격”을 “재산평가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 부과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8% 이자를 포함 4회 분할 납부하게”를 “분할납부하게”

로, “있다”를 “있으며, 분할 횟수는 4회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 8퍼센트의 이자를 적용한다.

제5조제4항 중 “납부기한내”를 “납부기한 내”로, “연체요율은 연 15%”를 “연체료율은 연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의 의무”를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원상복구 하여야”를 “원상복구하여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 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6월전”을 “6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로 한다.

제10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로, “수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로 한다.

제11조 중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의하여 징수한다”를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교통정책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교통정책과장 이 학 준
	팀장 직위 · 성명	버스지원팀장 강 신 형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조 건 희 (031-5182-115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하남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영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로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② “사용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라목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해 천	

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
시설 설치업체 “라 한다) 중 공
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를 말한다.

③ “수탁자” 라 함은 공영차고
지를 위탁받아 운영 ·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
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
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적으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
다.

④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운송

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
(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
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
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탁자” 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 · 관리하는 자
를 말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 공영차고지의 사
용-----
---.

② 제1항에 따른 -----

----- 따라 -----

---.

③ 시장은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
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 여유공간이 있을 경
우에는 시에 기 · 중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삭 제>

사업자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①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용면적(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50.

2. 천연가스버스 보급 운송사업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단, 천연가스버스와 경유버스의 운행대수 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

제5조(사용료) ① -----

-----.

1. -----
----- 사
용료는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 -----

-----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이하 “재산평가가
격” ---

2. 전기·수소·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는 재산
평가가격-----
----- 전기·수소·천연
가스버스와 -----
-----.

3. 천연가스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업체는 재산평
정가격의 1000분의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는 선납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
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
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허가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8% 이자를 포
함 4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후단 신설>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
은 연 15%로 한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3. 전기·수소·천연가스 -----
----- 재산평
가가격-----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
-----.

③ -----

----- 분할납부하게 -
----- 있
으며, 분할 횟수는 4회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 8퍼센트의 이
자를 적용한다.

④ ----- 납부기한 내-----
----- 연체료율
은 연 15퍼센트--.

⑤ ----- 그 밖의 ----

-----.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설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설치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치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 방지법, 소음 ·

----- 주의의무-----
-----.

② -----

----- 지체 없이-----

----- 원상복구하여야 ----.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
----- 각 호-----

-----.

-----.

1. · 2. (현행과 같음)
3. 「소방기본법」-----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 · 진동관리법」, 「폐

<u>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u>) 에서 정한 시설물을 정상가동 하지 않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5. <u>기타</u>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 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 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u>의하여</u>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 고 사용목적물을 회수하는 경 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하기 <u>6월전</u>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u>제6조의 규정에 의한</u>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u>6월이상</u> 연체하였 을 경우 4. <u>제7조의 규정에 의한</u> 사용자 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u>기타</u> 관계법령 및 <u>이 조례에</u>	<u>기물관리법」 등</u>----- ----- ----- ----- 5. <u>그 밖에</u> ----- -----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 --- <u>각 호</u>----- ----- --. 1. ----- <u>따라</u> ----- ----- --. -- <u>6개월 전</u>----- ----- --. 2. <u>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u> ---- ----- 3. ----- <u>6개월 이상</u> ----- ----- 4. <u>제7조에 따른</u> ----- ----- -- 5. <u>그 밖에</u> ----- <u>시장</u>-----
--	--

<u>의하여</u>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u>의하여</u>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개인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u>제6조제2항의</u>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2. (생략) 3. <u>기타</u>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생략) ② <u>제1항의</u> 규정에 <u>의하여</u>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운송사업자를 포함한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리지원) 시장은 <u>제9조의</u> 규정에 <u>의하여</u> 관리를 위탁한	----- ----- 제9조(관리의 위탁) ① ----- ----- ----- ----- - <u>따라</u> ----- ----- ----- ----- ----- -----. 1. <u>제6조제2항에</u> 따른 ----- -----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 4.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u> 따라 공영차고지의 <u>관리를</u> ----- ----- ----- -----. 제10조(관리지원) ----- <u>제9조에</u> 따라 공영차고지의 -----
--	---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 비 또는 경비를 <u>수탁자</u>에게 지 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하남시공 유재산관리조례</u>를 준용한다. 제12조(사용료 연체시의 회수) 제 <u>5조의 규정에 의하여</u> 부과된 사 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u>의하여</u> <u>징수한다.</u>	----- ----- <u>예산의 범위에</u> <u>서 수탁자</u>--. 제11조(준용규정) ----- ----- 「<u>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u>」---. 제12조(사용료 연체시의 회수) 제 <u>5조에 따라</u> ----- ----- ----- <u>따라 징 수한다.</u>
---	---